

늘푸른요양원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(계약기간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하고 본인의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서 갱신 후 갱신 만료기간으로 한다. 그 이후에도 같은 경우 반복 될 수 있다.

2. (계약목적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은 이용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 부담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3. (입소보증금 및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) 입소자의 자격과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며, 별도의 입소보증금은 없다. 입소비용은 매년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비용수납한도액 범위 이내로 한다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1의 표와 같다.

4. 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① 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과 이용자(보호자) 간의 시설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.

② 이용 계약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.
노인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, 신분증 등

③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◎ “을”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◎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◎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④ 입소자의 의무

- ◎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◎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◎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◎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◎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⑤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◎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◎ 입소자의 월 이용료 (본인부담금,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등) 입소비용 부담의무
- ◎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◎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◎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- ◎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파손, 폐기 등에 관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 의무

⑥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◎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◎ 입소자의 대한 욕구계획을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
- ◎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권리
- ◎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◎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, 퇴소(전원)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◎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
- ◎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◎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◎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
- ◎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4. (계약의 해지)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- ①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
- ② 본인이 사망한 경우
- ③ 사회복지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단이 필요한 때
-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
- ⑤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타 입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통보
- ⑥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

5. (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) 이용료는 후불 청구한다. 단 선불로 납부시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 입소보증금은 없으므로 해당없음.

별첨 1. >

2026년 늘푸른요양원 본인부담비 (30일 기준)					
구 분			1등급	2등급	3~5등급
기준	급여비용(1일)		93,070	86,340	81,540
	급여비용(30일)		2,792,100	2,590,200	2,446,200
일 반	국가부담(80%)		2,233,680	2,072,160	1,956,960
	본인부담 (20%)		558,420	518,040	489,240
	식간식비 (일 6,000)		180,000		
	본인부담금총액		738,420	698,040	669,240
감 경 (차상위)	본인 부담 경감률 40%	국가부담(88%)	2,457,048	2,279,380	2,152,660
		본인부담 (12%)	335,052	310,820	293,540
		식간식비 (일 6,000)	180,000		
		본인부담총금액	515,052	490,820	473,540
	본인 부담 경감률 60%	국가부담(92%)	2,568,732	2,382,990	2,250,510
		본인부담 (8%)	223,368	207,210	195,690
		식간식비 (일 6,000)	180,000		
		본인부담총금액	403,368	387,210	375,690
기초생활 수급권자	급여비용		국가부담(100%)		
	식간식비		면제 (지자체 부담(100%))		
	본인부담 총금액		면제		
비 급 여	비급여 추가 적용일		2026.01.01 - 2026.12.31		
	비고				
	식사,관급운동식,간식비 청구기준 ☐		식사,간식 제공 기록건만 청구		
	식사재료비	(1식)	2,000 원		
	관급운동식비	(1개월)			
	간식비	(1일)			
	식사재료비 + 관급운동식비 + 간식비 월한도액 ☐		한도액 없음		
	상급침실비	(1인실-1박) (2인실-1박)			
	상급침실비 월한도액 ☐		한도액 없음		
	이 미용비	(1개월)			

< 비급여 항목 >

1. 식비 1일 1식 2,000*3 (간식비 포함)
2. 이. 미용비 및 상급침실 이용료 등은 필요시 선택사항
3. 원단위 절사